

(앞 쪽)

제 호

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신고증

1. 명칭(특화운영 대상):

2. 소재지:

3. 운영자(법인)명: (생년월일:)

(법인)등록번호:

4. 상담소장 성명: (생년월일:)

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신고증을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직인

변경사항

날짜	내용	기록자 (서명 또는 인)